



제 428회 국회(임시회)  
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 전통사찰의 화재·재난 예방 및 보호 강화 〉

- 이헌승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9864호)
- 정희용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160호)
- 임종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185호)

2025. 8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천우정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I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|
| 1. 전통사찰의 화재·재난 예방 및 보호 강화(안 제19조의2) ..... | 4  |
| ※ 참고자료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 |

# [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제2209864호) ]

## 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이현승 의원 등 13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4. 16.

다. 회 부 일 : 2025. 4. 17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(形象)을 봉안(奉安)하고 승려가 수행(修行)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인데,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음.

전통사찰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음. 그러나,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전통사찰을 유지·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·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).

# **[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제2210160호) ]**

## **I . 제안경위**

가. 발 의 자 : 정희용 의원 등 11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4. 28.

다. 회 부 일 : 2025. 4. 29.

## **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지난 3.22.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,

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,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,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등).

# [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제2210185호) ]

## 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임종득 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4. 28.

다. 회 부 일 : 2025. 4. 29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·대비·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전통사찰의 화재·재난 예방 및 보호 강화(안 제19조의2)

##### 가. 개정안 요지

- 이들 개정안은 산불·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보험 가입, 방재시설 설치, 예방·대응 조치 및 긴급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).

#### [ 이헌승의원안 조문대비표 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,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<u>설치하도록</u> 노력하여야 한다. | 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 <u>설치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</u> -----. |
|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<u>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할</u>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   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 <u>설치 및 유지·관리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할</u> -----<br>-----            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지원할 수 있다. | -----<br>-----.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[ 정희용의원안 조문대비표 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및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u><br>1. <u>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,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</u><br>2. <u>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</u><br>3. <u>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및 이전을 위한 조치</u><br>4. <u>그 밖에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</u>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 임종득의원안 조문대비표 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·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br>1. <u>전통사찰 주변의 수목 제거, 방염포 설치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·대비·대응하기 위한 조치</u><br>2. <u>배수로, 석축 정비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·대비·대응하기 위한 조치</u><br>3. <u>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긴급이전 등 보호 조치</u><br>4. <u>그 밖에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</u><br>④ <u>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</u>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주지는 화재, 재난 및 도난 등을 막기 위해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<sup>1)</sup>.
-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전통사찰과 사찰 내 문화유산을 전기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
### [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]

- 사업기간 : 2012년 ~ 계속
- 지원예산 : 2,033백만원 (23개소 지원) \* 자치단체자본보조(국비 40%, 지방비 40%, 사찰자부담 20%)
- 사업내용 :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
  -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: 전기화재의 직접적 원인인 아크를 사전에 검출, 차단, 통보하는 시스템
  - 통합관제 시스템 : CCTV 영상분석, 재난 센서 감지, 출입경계 등을 지능형으로 상시 감시·분석,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하는 시스템

- 한편, 전통사찰 총 983곳 중 299곳(2025년 4월 기준, 30.4%)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.

1)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 ①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,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통사찰과 그 안에 보존된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, 재난 발생 전 예방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,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-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각 개정안은 모두 전통사찰의 재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공통적인 입법 취지를 갖고 있음.
- 먼저, 이헌승 의원안은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목조건축물이라 화재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고, 가입하더라도 문화유산적 가치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사찰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,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이는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화재 위험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다각화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다음, 정희용 의원안은 화재 및 수해 예방, 그리고 문화유산 긴급 보호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목 제거, 방염포 설치, 배수로 정비, 문화유산의 긴급 이전 등의 대응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.

- 이어서, 임종득 의원안은 정희용 의원안과 유사하게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 근거를 규정하되,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(제4항)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정희용 의원안과 임종득 의원안 모두 전통사찰에 대한 사전적인 재난 예방 등을 마련하여 전통사찰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다만, 개정안에 대해서는 **문화체육관광부**가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 지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재·재난 대응 조치를 신설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, 재정 당국에서 제기하는 ① 기존의 전통사찰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사업과의 중복 지원, ②공적 재원 사용의 정당성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.
  - 기존 사업으로 행안부의 재난대책비(3,600억),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(579억) 및 숲가꾸기(2,392억),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돌봄사업(195억) 및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(240억) 등이 있다는 설명임.

○ 그리고,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다음과 같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임.

- 기획재정부는 전통사찰은 종단 소유의 재산으로 기존의 ‘방재시설 설치 노력’도 전통사찰의 주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예산 지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, 화재보험료 부담 및 화재 및 재난 대응의 주체는 종단(주지)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, 개정안의 재해예방사업들은 기존 법령<sup>2)</sup>과 사업<sup>3)</sup>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임.

○ 한편, 국가유산청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방화 등 인적훼손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379 |

---

2) 자연재해대책법,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법, 급경사지 재해예방법, 소하천정비법,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법,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

3) 행안부 재난대책비(3,600억), 산림청 산불방지대책(579억) 및 숲가꾸기(수목제거 등, 2,392억),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돌봄사업(195억) 및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(240억) 등

## 참고

## 전통사찰 지정 현황

(단위 : 사찰 수 / '25.5월.현재)

| 시도별   | 사찰수 | 종 단 별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| 조계종   | 태고종 | 천태종 | 법화종 | 기 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 울   | 60  | 45    | 4   |     |     | 11  | 선학원4, 대각회2, 본원종, 보문종, 관음종, 정안종, 법화선종                  |
| 부 산   | 36  | 28    |     |     | 2   | 6   | 선학원3, 원효종, 옥련선원, 승가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 구   | 28  | 26    | 1   |     |     | 1   | 선학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 천   | 9   | 7     | 1   |     |     | 1   | 관음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 주   | 6   | 6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 전   | 6   | 3     | 1   |     |     | 2   | 선학원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울 산   | 11  | 11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 종   | 8   | 4     | 2   |     |     | 2   | 선학원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 기   | 105 | 88    | 7   |     | 1   | 9   | 선학원3, 일승종, 여래종, 해동종2, 법상종, 불이종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 원   | 48  | 45    | 2   |     |     | 1   | 지암불교문화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 북   | 84  | 53    | 19  | 1   | 3   | 8   | 선학원4, 선교종2, 육주회, 혜능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 남   | 75  | 65    | 5   |     |     | 5   | 선학원2, 법륜종2 대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 북   | 119 | 76    | 36  |     |     | 7   | 선학원2, 화엄종, 진묵대사유적진흥회, 보문종, 관음종, 심우회                   |
| 전 남   | 99  | 82    | 9   |     | 2   | 6   | 원효종, 법륜종, 선각종2, 선암사(조계/태고), 천태암, 용화종                  |
| 경 북   | 172 | 150   | 5   |     | 6   | 11  | 선학원2, 원효종, 대각회2, 법왕종, 영화종, 미륵종, 대한미륵불교, 무소속2          |
| 경 남   | 105 | 98    | 1   |     | 3   | 3   | 선학원2, 관음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주   | 12  | 8     | 2   |     |     | 2   | 선학원, 대각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     | 983 | 795   | 95  | 1   | 17  | 75  | 선학원29, 대각회5, 원효종3, 법륜종3, 관음종3, 선교종2, 해동종2, 선각종2, 기타26 |
| 비율(%) | 100 | 80.8  | 9.8 | 0.1 | 1.7 | 7.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